

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6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6. 5. 30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(대통령령 제19270호)의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2 본문 중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 지급 단가 상향 조정(안 제2조의2)
 - 근무지 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 : “1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
 - 근무지 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 :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개정함
 - 관용차량 이용하는 자 :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88호(2006. 2. 7. ~ 2006. 2. 27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.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

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1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, “5천원”을 각각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의 2 (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) 공무원(운전원을 포함한다)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<u>1만원</u>을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<u>5천원</u>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고성군 관용차량관리 규칙」 제6조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5천원</u>을 감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2조의2 (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)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2만원</u></p> <p>----- <u>1만원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1만원</u>-----.</p>